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8. 12. 13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이용주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

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(2018. 12. 1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용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모자보건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·출산·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하여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-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기본사업에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8조~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인재)

○ 본 조례안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모자보건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·출산·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1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 제정 내용은

- 안 제1조~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
-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지역협력 시스템 구축, 임신·출산·육아 등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, 공공시설 이용 배려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
- 안 제5조에서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
- 안 제6조~제7조에서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기본사업으로 출산장려·양육부담경감, 모자보건·건강증진 등 4가지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8조~제13조까지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출산친화도시 관련 사 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,

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출산장려·양육부담 경감, 모자보건·건강증진, 가족친화활동, 일·가정양립 사업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출산율 유지·발전 및 출산 환경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또한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(이용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63 번 호

발의년월일: 2018년 11월 일 발 의 자:이용주의원외 3명

1. 제안이유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모자보건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·출산·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정의(안 제2조)
- 나.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(안 제5조)
- 다.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기본사업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라.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8조~13조)

3. 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모자보건법」,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18. 11. 8. ~ 11. 13.): 의견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모자보건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출산친화도시"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·출산·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.
- 2. "출산친화도시정책"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·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.
- 3. "출산친화도시사업"이란 이 조례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모자보건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·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임신·출산·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.

-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을 포함한 관련 단체·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·출산·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경우에는 임신·출산·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 - ⑤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제안 및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있다.
- 제5조(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)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(이하 "조성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,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,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
 - 2.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,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
 - 3.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
 - 4. 그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
 - ②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

-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- 제6조(조성기준)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
 - 2.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
 - 3.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
 - 4. 보육지원 및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
 - 5.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
 - 6.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**제7조(기본사업)**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
 - 2. 모자보건·건강증진사업
 - 3.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
 - 4. 일·가정양립사업
 - 5.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8조(협의회의 설치)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

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.
- 1.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
- 2. 조성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- 3. 정책 및 사업의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
- 4. 연구개발,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
- 5.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
- 제9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 다.
- 제10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- 2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- 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- 제11조(협의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 - ② 정기회는 연 1회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 -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·장소·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2조(간사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.
 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·관리한다.
- 제13조(수당 등)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

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